

“공익에 헌신하는 변호사상 만들자”

대한변호사협회 20일 창립 60주년 기념식·변호사대회 개최 “지자체 세금낭비, 감시·통제하겠다” 등 10개항 결의문 채택



대한변호사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공익인권분야에 헌신하고 법치주의를 확산하며 국제화·세계화를 이룰 것을 다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 등 내외빈과 회원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협 창립 제60주년 기념식 및 제21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신영무 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쟁의 포화 속에 탄생한 우리 단체가 어느덧 60주년을 맞았다”며 “사회적 기반도 다지고 응분의 평가도 받을 시간임에도 끊임없는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대한변협이 나아갈 길은 첫째 공익인권분야에 헌신하는 길, 둘째 법치주의를 확산시키고 직역을 확대하는 길, 셋째 국제화·세계화를 통해 국제법조사회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영무 협회장은 청년변호사들을 향해 “미래를 예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로 진출해 도전한다면 보석처럼 빛나는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14개 지방회장단 추진 10개항 결의문 채택
대한변협은 대회에서 “기본적 인

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공익 봉사 정신으로 무장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을 다짐한다”는 결의문을 냈다.

이날 결의는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이 추진했다. 변호사로서의 다짐 4개항, 국가 기관 등에 대한 결의 6개항으로 이루어진 이날 결의문은 공익 헌신, 법치주의 확립, 국제화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다짐과 더불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가 엄정 중립을 지킬 것, 학교폭력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신규법조인 취업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변협은 “지자체의 전시성 사업추진, 낭비성 공사발주 등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재정파탄 직전까지 간 사례를 목격해 왔다”며 “이제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낭비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시·통제하겠다”고 다짐해 주목받았다.

대한변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대한변협 창립60주년, 새로운 시대의 변호사상’으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성과와 개선 방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변호사’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격변의 시대, 변호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공익활동, 법치주의 확립, 국제화라는 세 담론으로 구성된 것으로 변호사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변호사상 대주제로 세가지 섹션 심포지엄 열려
공익활동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I에서는 이정원 변협 사업이사가 ‘대한변협 사업활동과 향후계획’을 소개했고 김종철 인권이사가 ‘대한변협 인권활동과 향후 계획’을, 염형국 변호사가 ‘공익전담변호사 활동과 개선방향’을, 파트리샤 게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의 의무공익활동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2면에 이어짐

헌재, 40여년 변리사 소송대리 침탈시도에 쐬기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정당... 전원 합헌결정 “법률지식 요구되는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맡아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위해 40여년간 벌여온 변리사단체의 시도는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된 셈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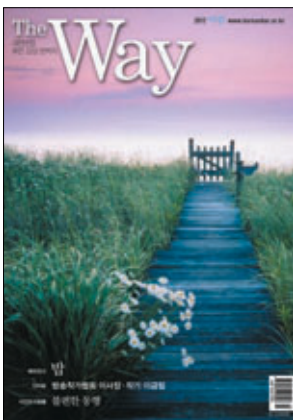
헌법재판소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

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3면에 이어짐

‘차가운’ 법조인들이 쓰는 ‘따뜻한’ 사람 이야기

대한변호사협회 휴먼 감성 문학지 The WAY [더 웨이] 여름 호



인터뷰
방송작가협회 이사장·방송작가 이금림 / 박형연

테마코너 - 밥
미스터 초밥왕 / 최진영
밥 안 해도 되는 팔자 / 이경아
밥에 대한 단상 / 박동섭
“엄마, 밥 줘” / 정인봉

내가 만난 변호사
법조윤리 강의의 추억, 에반 스투어트 / 존 칼슨

사건과 사람들
불편한 동행 / 엄상익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02-2087-7751
구독료 : 1년 12,000원(날권 3,000원)

▶1면 '변호사 대회'에서 이어짐 '로펌의 공익활동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로펌이 사회공헌활동이나 자원봉사, 기부 등 공익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성변호사에 대한 차별이나 가정과 양립하기 힘든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에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Ⅱ에서는 이병주 기획이사가 '법률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직역확대 노력'을, 백승재 변호사가 '경제계의 법치주의 확산과 사내변호사 역할'을, 김성만 변호사가 '공공분야에서의 법치주의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각 발표했다.

조순열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은 '법률관련 직역간의 갈등과 통합문제'를 주제로 "다른 직역 자격자들이 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한 입법운동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17대, 18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격 폐지법안'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등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법안이 10건 이상 발의되고 있음에도 변호사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변리사들이 대통령 직속 국가직 재산위원회를 통해 국가기관의 입법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소송대리권 문제는 법조계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국가직 재산위원회가 논의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제화 방안을 모색한 심포지엄Ⅲ에서는 손도일 국제이사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에 대한 국변호사들의 지원 방안'을, 김병주 변호사가 '국제인권과 관련한 한국변호사들의 활동'을, 김갑유 변호사가 '한국변호사들의 국제법률기구 참여 및 국제중재에 있어서의 활약'을 주제로 발표했다.【주제 발표 요약 10~12면】

김갑유 변호사는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는 단기적으로 그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넓히고 시장에서의 기회를 높이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차근차근 투자하고 그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도 하고 국제법률시장에서의 위상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변호사가 국제기구나 국제법률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언어능력과 국제감각, 성실한 참여와 봉사정신을 키울 것을 조언했다.

제43회 법률문화상 김이조 변호사 수상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이조(84·고시 3회) 변호사가 법조 역사를 정

리한 공로로 제4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에 재원을 출연한 오윤덕(70·사시 13회) 변호사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이조 변호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더 많이 연구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법조인들이 역사와 과거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책으로 내겠다"고 다짐했다.

오윤덕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랑샘'을 운영하며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정신적 지지자가 되어 왔으나 사랑샘 입주 건물이 재개발되어 돌려받은 보증금 5억원을 변협에 회사했다.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오 변호사는 법을 공부하는 청년들에 대한 장학금과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봉사재단을 만들어 달라며 회사했고 변협은 최근 '사랑샘재단' 설립인가를 마쳤다. 오 변호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상상력이 우리의 앞날을 창조한다"며 사랑의 실천을 당부했다.

함께 열린 제66회 변호사연수회에서는 가재환(72·고시15회) 변호사가 '윤리연수'를, 송옥렬(43·사시32회)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개정상법 해설'을 각각 강의했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koreanbar.or.kr】

사진으로 보는 변호사 대회



'대한변협 창립 60주년, 새로운 시대의 변호사상' 심포지엄(위 사진)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은 김이조 변호사(가운데 사진)와 감사패를 받은 사랑샘 재단 오윤덕 수상자

변호사 25時
-251-
(야근의 이유)
변호사 이영욱

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회사에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시사고발!
생명을 위협하는 변호사의 야근!

힘들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매일 늦게까지 있어요? 잠중에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힘들어셔요...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2087-7754

매일매일 허덕허덕 피로에 젖어... 악순환이로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시행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제화·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 하며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법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 처리 과정
- ① 신청 접수(우편·방문)
- ②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 검토
- ③ 심사결과 상임이사회 상정 및 의결
- ④ 신청자 결과 통지(등록증 교부·대한변협신문 공시)

◆ 신청 분야(최대 2개 등록 가능)
-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등록 유효기간: 5년

◆ 등록 신청비: 1개 분야당 100,000원
※ 협회(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0-353899,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등록신청비를 송금하시는 경우, 입금여부를 협회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우편번호: 137-885

◆ 연락처
- 전화 02)2087-7721, 팩스 02)3476-4008
- 이메일 jdchang78@koreanbar.or.kr
- 담당자: 주임 양희창(법제과)

변호사가 사는 법



김태섭 변호사

변호사의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수임료를 정하는 것이다. 기업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자문을 하는 경우는 업무에 소요된 시간에 미리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단발성 사건인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후배 변호사로부터 받는 질문 중 가장 흔한 것도 보수에 관한 것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직업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다. 아픈 과거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친정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해주었다. 누구를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어줬던 것이다. 그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었지만, 아주머니는 새롭게 세탁된(!) 신분으로 시집을 갔고 지금껏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몇 달 전. 까맣게 잊고 있던 첫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려는 것이 아니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려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것이었다. 현재의 남편도 과거 아주머니가 결혼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출 필요는 없었다. 문제는 예전과는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로는 발급받을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 거의 있기 어려운 중혼 관계였다. 첫 번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변호사의 보수

해야 할까.

물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사건의 난이도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는 몇 번이나 가야 하는지, 서면은 몇 개나 작성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대강의 금액을 생각해낸다. 그 다음으로는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다. 수년 간의 노력 끝에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이 한 일을 단순히 그 업무 자체에 투입된 시간만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몇 년 전 라디오 방송에서 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진행한 일이 있는데, 청취자 아주머니 한분이 상담하겠다고 찾아왔다.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은 이 분이 털어놓은 사연은, 나의 약은 지식으로는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수십년 전 혼인 적령기가 되자마자 결혼한 첫 남편은 아주머니에게 좋은 인연이 되지 못했다.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서 폭행을 해대기 일쑤였던 것이다. 견디다 못한 아주머니는 집을 뛰쳐나왔다. 몇 년간 여러

목표인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중혼을 이유로 두 번째 혼인을 취소하고 호적을 정리한 후에 다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연이어 떠올랐다. 친정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애초에 어떻게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는지 파악할 길도 없었다.

다행히 당사자들이 다른 해법을 찾아서 해결했지만, 만약 이 사건을 선임했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지도 않고 더구나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려는 것이 동기인 사건에서 많은 보수를 청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도 보수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변호사 보수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가끔 접하게 된다. 그러나 난이도와 의뢰인의 형편까지 고려해서 각양각색의 사건에 딱 맞는 수임료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로 살아가면서 만만한 일은 정말 하나도 없다.

kts@lawkh.com

사설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의 탄생은 1952년 7월 28일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연 창립총회를 그 시초로 본다. 그 한달 뒤인 8월 29일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내고 공식 출범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 탄생한 변협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해왔다. 4·13 호헌조치에 가장 먼저 규탄성명을 내기도 했고 각종 고문치사사건을 규명하러마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기관원들이 상주하며 임원들의 책상서랍을 뒤지는 수모도 겪으며 지켜왔다.

그러나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21세기에 변호사들은 '최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위기의 근원은 국민과 유리되어 돈벌이에 급급했기 때문으로, 해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변호사법 제1조가 적시하고 있다.

이제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눈을 돌리고 봉사활동, 기부 등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 하며 비윤리적 기업은 더 이상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 변호사들이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로 다시 태어나려면 자기 것을 내려놓고 공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몸을 던져 불의에 항거하고 약자의 편에서 함께 울었던 선배들이 있다. 그를 본받아 21세기에 맞는 공익헌신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자체의 세금낭비 사례를 찾아내 철저히 환수하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행정기관의 소송수행도 이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맡아야 한다. 해마다 바뀌는 공무원으로는 제대로 소송수행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그것이 세금이 새는 현상이 된다. 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빛나는 성취를 이루려면 법조인 입법보좌관이 있어야 함을 보여 주자. 국내 송무사건에만 매달리지 말고 세계로 눈을 돌리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가는 곳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사도 함께 가자. 그것이 우리 변호사의 미래상이다.

대한변협신문 ©2012 2000년 3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743

대한변호사협회 발행인 신영무 협회장 편집인 엄상익 공보이사 인쇄인 최낙관

- 대표전화 02) 3476-4000
- 팩시밀리 02) 3476-2771
- 기교·기사제보 02) 2087-7752
- 구독·광고문의 02) 2087-7754
-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 전자우편 news@koreanbar.or.kr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총무	과	02)	2087-7715
총법	과	02)	2087-7722
인회	과	02)	2087-7733
연호	과	02)	2087-7743
수보	과	02)	2087-7793
심사	과	02)	2087-7754
사업·기획	과	02)	2087-7762
국제	과	02)	2087-7772
		02)	2087-7784

대한변협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변협만평

이우정



▶1면 '소송대리권'에서 이어짐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

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바로잡습니다

본보 8월 20일자 김이조 변호사 인터뷰 중 '동차합격 유일'을 '제3회 예비시험과 제3회 고시사법과 합격은 유일'로, 위조등기부사건 소개에서는 '위조등기부가 아님을 밝혀냈다'로 수정합니다.

기도 했다.

대한변협 정태원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 나 특허 분쟁에서 인력의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고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변호사법 질의회신

“근무지 관할 경찰서 사건도 전관 수임 해당돼”

작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 취업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제31조 제3항)’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개업한 변호사가 해당 검찰청 관할구역에 속한 경찰서(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서 포함)에서 수사하거나 내사하는 사건의 수임 역시 제한될까?

이에 대해 변협은 ‘그렇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변협은 “모든 형사사건은 검사의 지휘 하에 있고 경찰청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 이르러야 비로소 종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해당 검찰청의 검사에게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지휘에 관여하는 방법 등으로 전관예우의 폐단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전관예우의 폐해를 여

떻게 해서든 시정해보고자 하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임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무서 퇴직 후 수임제한 범위 그렇다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다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에 해당하는 모 변호사가 최근 변협에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수임할 수 없는 사건이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산하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행정심사 사건에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관할하는 소송사건에까지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 물어왔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이하의 법문상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처리란 당해 국가기관이 문제가 된 사건에 관하여 심의, 조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조세행정소송의 경우 당해 국가기관인 지방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이 심의, 조사,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경우까지 수임제한규정의 규범력이 미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국세청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은 당해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하는 사건, 즉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사건화하기 이전 단계의 사건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법원에 소가 제기돼 소송사건으로 이행된 후에는 당해 지방국세청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든 당해 지방국세청이 위임하는 사건이든 불문하고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단체, 공공기업 등에서도 일선 행정현장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치주의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화추진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법률가를 총원해 법령 입안 및 심판의 투명성 제고 등 법치주의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 행정소송의 내실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 전체의 법률비용 감소를 위해 준법지원인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산 5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1362개 모두에 준법지원인을 두고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 선거범죄 엄벌한다

양형위, 20일 양형기준 의결

내달 1일부터 유권자·후보자 매수,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 당내 경선 매수 행위,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최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하게 처벌하여 뿌리 뽑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20일 제4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범죄 양형(형량 결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당선인에 대한 매수 행위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감경을 받아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또 양형위는 그동안 당내 경선이 본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했다고 판단, 당내 경선 관련 매수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당내 경선의 부정이 본 선거 결과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행위에 대해서도 과거의 관행보다 처벌을 강화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선거 전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시정조치 등을 해 비방 대상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형을 감경하도록 했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닌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흑색선전을 펼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선거범죄는 일정액(당선인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효력이 있다.

한편 양형위는 10월말 다시 회의를 열고 조세, 공갈,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회 “노동부 대규모 변호사 특채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역 노사현장에서 활동할 변호사 50여명을 특별채용키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모델 삼아 향후 다른 정부기관과 지방자

25개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4~25일 양일간 중앙대학교 체육관에서 2013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여해 학교별 입학전형 주요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상담부스에서 1:1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등 양방향 행사로 치러져 로스쿨 수험생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로스쿨 입학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자리였다는 평을 들었다.

www.rainbowlaw.or.kr

결혼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온라인법률상담센터

www.rainbowlaw.or.kr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다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국 100여명의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분야별로 상담 해드리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의 법률구조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분야

- 국적법
- 결혼중개업법
- 민사법
- 행정법
- 출입국관리법
- 형사법
- 가사법
- 기타

상담 방법

www.rainbowlaw.or.kr 로 방문

↓

원하는 언어선택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 선택)

↓

공개 상담 혹은 비공개상담으로 상담 글 게재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답변 도착 알림)

↓

변호사 답변 완료

쓴소리 바른소리



엄상익 변호사·변협 공보이사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법률분야 공로자에게 상을 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훌륭한 변호사를 선정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인권운동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회 회장전 전문기능을 갖춘 법의 달인 등이 존재했다. 마치 배와 사과, 바나나 중 어떤 과일이 최고냐를 묻는 것 같았다. "이제는 최고의 달인이 된 전문가에게 상을 쥐어하지 않나

20대 재벌그룹 회장이 비자금으로 재판관을 받던 1995년 겨울 서울지법 대법정에서였다. 변호사 업계의 간판스타들은 다 변호사석에 모였다. 대법관 출신, 장관 출신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다. 나는 방청석 한 귀퉁이에 앉아 구경하고 있었다. 법원에는 재판받는 재벌회장들을 위한 귀빈실은 없었다. 유일한 휴식장소가 화장실이었다. 그곳에서 씩씩한 장면을 목격했다. 재벌회장들이 오줌을 누고 있었다. 그 소변기 옆에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변호사들이 부동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네, 회장님" 하면서 지시를 받고 있었다. 재판장 때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낮에 먹은 밥알이 곤두섰다. 결국은 저렇게 비굴해져야 잘 살 수 있나 하는 회의가 들었다. 법정에서도 웃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말했다.

"모시던 어르신을 어떻게 법정이라고 함부로 피고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는 봉건시대 머슴의 생각을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그냥 가지고 있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변호

좋은 변호사의 자격

요?" 한 상임이사의 의견이었다.

변호사 사회를 보면 내남없이 명예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 같다. 그냥 변호사로 만족하지 못한다. 상을 받거나 대접받는 자리를 좋아한다. 그게 안 되면 어느 위원회 위원이라도 걸치고 싶어 한다. 꼭지 하나 더 단 도토리가 으스대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반면 돈이나 권력 앞에서는 철저히 무릎을 꿇는다. 어느 법정에서였다.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변론을 하라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변호사가 생긋 웃으면서 황송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재판부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변론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철저히 비굴했다. 그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부장판사 출신인 그의 표정 속에는 얼굴을 보고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알뜰한 계산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재판장을 할 때 변호사들에게 모멸감을 많이 주던 거만한 판사였다.

병아리 시절 나는 돈을 많이 벌었거나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를 거물로 알았다. 그들은 구름 위의 존재 같았다. 그런데 그런 시각이 바뀐 계기가 있었다.

사들의 영혼이란 없는 것 같았다. 그때 나의 변호사에 대한 직업관이 바뀌었다. 더 이상 그들을 존경하지 않기로 했다. 자존심을 포기하면 그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대한변협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지난 2년 동안 생각이 깊다고 알려진 수십 명의 변호사들과 만나 진지하게 변호사란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 과정에서 훌륭한 변호사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돈과 명예욕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변호사들은 이 직업이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란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었다. 변호사란 권력에 대항하고 사회문제를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좋은 변호사는 찾아오는 의뢰인을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이웃으로 여겼다. 상은 그런 변호사들에게 주어야 할 것 같았다.

eomsangik@hanmail.net



부산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펼쳐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는 18일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이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인연'은 지난해 5월 부산회 변호사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무료법률상담 등 재능기부 외에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부산법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특히 이날 봉사에는 방학을 맞은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의 회원 자녀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국내영업 개시

세퍼드 멀린, 16일 개소



미국계 로펌인 세퍼드 멀린이 16일 서울 을지로 센터원 빌딩 23층에 서울 사무소를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외국계 로펌이 국내영업을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퍼드 멀린의 서울 사무소는 금융, 국의 투자, 기업 인수합병, 공정거래, 지적재산, 상업소송, 국제중재, 엔터테인먼트, 정부 관련 법률자문 등을 주요 업무로 다룰

예정이며,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주재했던 김병수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김병수 대표 변호사(사진)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을 개척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올해 하반기까지 외국법 자문변호사를 최대 1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퍼드 멀린은 미국 표준지 선정 100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한 대형 로펌으로, 지난 15년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및 금융회사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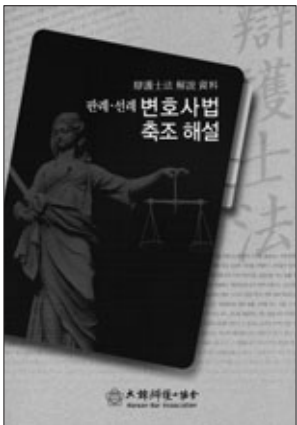
● 결혼

- ▷ 김영민 변호사(서울회·79년생) 본인=9월 1일(토) 오후 2시 aT Center 5층 크리스탈홀, 02)6922-6612
- ▷ 이한빈 변호사(서울회·74년생) 본인=9월 2일(일) 오후 3시 일산 사법연수원 소강당, 02)2692-9005
- ▷ 임정수 변호사(서울회·54년생) 장남 동현=9월 2일(일) 오후 6시 호텔 리츠칼튼 볼룸 (A3F), 02)3476-8700
- ▷ 김상민 변호사(서울회·80년생) 본인=9월 16일(일) 오후 6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예식홀), 02)3276-4368

● 부음

- ▷ 김호운 변호사(서울회·65년생) 빙모상=8월 17일(금), 02)596-9997
- ▷ 김한주 변호사(서울회·60년생) 부친상=8월 18일(토), 02)3471-3705
- ▷ 박철규 변호사(서울회·74년생) 부친상=8월 19일(일), 02)3404-0657
- ▷ 이선희 변호사(서울회·49년생) 부군상=8월 20일(월), 02)3478-5000
- ▷ 이남길 변호사(부산회·72년생) 부친상=8월 20일(월), 051)809-5080
- ▷ 정영근 변호사(인천회·68년생) 빙부상=8월 21일(화), 032)867-1119

판례·선례 변호사법 축조 해설집 판매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변호사들이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와 변협 징계 사례 등 400여 건의 사례를 선별해 조문·쟁점별로 정리한 '판례·선례 변호사법 축조 해설'을 판매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가격: 권당 10,000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과

문의처 전화 2087-7722, E-mail bgkim@koreanbar.or.kr

즐거운편지 



윤배경 변호사

돈 천원을 주고 매일 아침 정성 어린 격려의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작은 돈으로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보자

어느 석학은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빈민국에 있어 그 1달러는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고 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돈이라도 국제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자고 한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요즘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우리의 삶도 돈 몇백원에 벌벌 떨게 생겼다. 나라 밖까지 기부할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점심값을 조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편의상 짜장면 한 그릇 값을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하루 용돈을 산출하는 것 같다. 어려서부터 짜장면을 최고의 외식으로 알고 살아온 세대로서 짜장면 값의 오르내림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도 쉽다. 그렇게 볼 때, 현재의 짜장면 가격은 6천원 정도이니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요금(약 2200원)까지 합하면 하루 일하기 위하여 써야 할 최소 비용은 8천 200원 정도 된다. 여기에는 우리 삶의 소소한 여유를 지탱해주는 것, 예컨대 자판기 커피 한 잔 값(100원 내지 500원, '별다방' 커피는 언감생심이다!), 통신비(각자의 편차가 크므로 비교는 불가능하다) 등은 뺀 가격이다. 아마 이 부분까지 넣으면 최소한 만원은 가져야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 아내로부터 하루 용돈 5천원을 받아 출근을 한다는 결혼

2년 차인 한 샐러리맨의 자기 고백을 들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감추어진 신공(神功)이 부럽기까지 하다. 돈이라는 것도 재화의 일종이므로 돈의 크고 작음과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만족의 가치는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나는 천원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절절히 느끼면서 산다. 요즘 아침 일찍 출근하는 편인데 당연히 새벽 시간에 아내가 해 주는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사무실에 도착한다. 그런데 가까운 지하철 지하 상가에 떡을 파는 가게가 있다. 찹쌀떡을 파는데 놀랍게도 가격이 천원이다. 이것을 사두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먹으면 거뜬히 아침 요기가 된다.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점심 때까지 한 시간에 가게에 들러 떡을 사러 가니 언제부턴가 떡 가게 주인 아저씨도 나를 알아 보고 반긴다. 그는 떡을 검은 봉지에 싸서 넘겨주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덕담을 건네준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돈 천원을 주고 그런 정성 어린 격려의 말을 매일 아침 어디서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이른 아침에 떡값(?)으로 건네는 천원은 점심시간에 쓰는 짜장면 한 그릇보다 값진 가치를 가진다.

뿐만 아니다. 가끔 나는 단돈 천원으로 또 다

른 사치를 누리기도 한다. 사무실 근처에 선릉이라는 곳이 있다. 조선조의 성종대왕의 묘를 모신 곳인데 실은 성종대왕의 계비인 정현황후의 묘와 중종의 묘인 정릉도 함께 있는 곳이다. 심신이 고단할 때, 나는 사무실을 빠져 나와 이곳 선릉으로 간다. 입장료는 천원. 선릉을 들어 서면 도심의 소음이 사라진다. 대신 즐거운 새소리, 잘 가꾸어진 잔디와 꽃 등이 입장객을 반긴다. 각 왕릉 사이를 연결하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도토리 나무, 그 사이로 난 오솔길 등 분위기가 아늑하고 고즈넉하기 그지 없다. 마천루 빌딩 사이를 빠져 나온 서울의 바람마저도 선릉의 울창한 소나무 가지 사이에서 향기를 머금는다. 숲 내음에 취해 심호흡을 하노라면 난 순간에 도심을 떠난 나그네가 된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변화한 테헤란로 옆에 이토록 잘 가꾸어진 자연이 있으리라고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다. 느릿느릿 걷는 1시간 가량의 산책이 그토록 여유롭고 즐거울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 입장료 천원은 웬만한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커다란 행복을 준다.

하루 하루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때이지만 그럴수록 작은 돈으로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본다. 가난한 나의 마음에 기부를 하는 셈으로 말이다.

bkyoon@yoolhyun.com

 지방네트워크 부산회

결혼이민여성과 법률구조



김외숙 변호사

국적을 취득하면 국민으로서 보호와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아직 외국인의 신분이라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부합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현실이 어디 그러하던가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던 중고등학교 시절, 나를 행복하게 해 준 정말 고마운 친구는 손바닥 크기의 삼중당 문고판 책들이었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장 폴 사르트르, 루이제 린저, 알베르 카뮈, 앙드레 지드 등등.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무궁무진한 인생의 비밀과 지혜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재미에 나의 책임기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간간이 독서의 즐거움을 깨트리며 나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었는데 그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외국이름들이다. 라스콜리니코프, 네홀류도프, 스메르자코프, 소설 속 러시아 남자들의 이름은 왜 그리 길고 생경하던지. 그나마 소냐, 토냐, 라라, 카추샤처럼 짧막한 여자들의 이름은 비교적 나은 편이었다.

그 시절 소설 속에서 멀게만 느꼈던 이름들을 나는 요즘 사무실에서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다. 나의 클라이언트 리자, 타냐, 올가, 소비에타, 로리타, 나타샤 덕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이들은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게 된 결혼이민여성들이다.

나와 그녀들 사이의 인연은 수년 전 부산에서 일하는 미국변호사의 소개로 T를 만나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에서 영문학과 대학생이던 그녀는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한다는 한국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러시아에서 그와 결

혼식을 올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 아이도 출산하였다. 그 후 남편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 놓겠다며 한국으로 돌아갔고, 아이가 한 살 되던 무렵 그녀는 남편의 초청으로 입국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사업을 하던 남편은 도대체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집에 돈을 들여주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T가 영어강사를 하며 세 식구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였고 남편은 그녀의 통장이 마치 제 것인 양 마음대로 돈을 빼내 쓰곤 하였다. 사랑은 물 건너간 지 오래였고 남편은 그녀와 아이를 경제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내팽개쳤다. 도무지 남편이란 존재가 그녀에게 남아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T와 아이의 생활에 거추장스럽기만 하였다. 공부상으로 엄연히 남편의 존재가 표기되어 있는 이상, 사소한 서류 한 가지를 발급받는 데에도 번번이 남편의 동의나 확인을 요구 받았고 모자가정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반면에 남편으로서는 돈줄이 되어 주는 그녀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는 죽어도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떠나면 한국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온갖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요컨대, 재판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해야만 T의 홀로서기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한국말이 서툰 그녀에게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절실하였다.

T 이후에 만난 결혼이민여성들의 사연도 거

의 마찬가지였다. 그녀들이 만난 한국 남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후광 덕분에 훨씬 근사해 보였던 것이지만 실상은 아주 실망스러웠다. 자신을 믿고 이국땅에 온 아내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커녕 그녀들의 강한 생활력에 빌붙어 무위도식하는 남자, 걸핏하면 추방되게 하겠다며 위협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남자, 이것이 남편의 실제였던 것이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주어져야 하고, 아직 외국인의 신분이라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법정신에 부합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러하던가.

나는 그녀들의 사건을 전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 소송구조를 요청하거나 부산 가정법원에 법률구조를 신청해 수행해 왔다. 그녀들의 경제적 형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지원은 인권보호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의 서툰 우리말 때문에 변호사가 해야 할 수고가 당연히 많아진다. 게다가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변호사에게는 손익이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더 많은 법률구조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률구조는 우리 사회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그녀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존중받는 개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와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므로,

busandike@yahoo.co.kr

충북변호사의 특별한 이야기



이태화 변호사

한국정치, 그리고 한여름 밤의 꿈

요즈음 또 다시 짜증이 심하게 나고, 기분도 별로입니다. 온국민이 열광하고 기대와 열망으로 밤을 지새우며 살맛난다고 신나하던 런던 올림픽이 끝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무슨 변덕이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대중을 집단최면으로 이끈 올림픽의 후유증 때문에 더욱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 보니 주위는 온통 회색빛의 음울한 기운들뿐임을 느끼고, 어찌할 수 없다는 실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이유는 좀 더 심각하고, 치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때문이라면, 점점 어려워지고 가라앉는 경제 때문이라면, 옆집의 애완견이 대문앞에 오물을 남겨놓은 때문이라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무더위는 시간이 지나면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 것이고, 대문 앞의 오물은 깨끗하게 치우고 옆집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지는 경제는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변화할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대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짜증나게하고 기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치, 정치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인데, 국민에

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가 온통 실망만 주고 짜증덩어리일 뿐인데, 우리가 이를 어찌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그것에 규율받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없어 진퇴양난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질이 되어 버린 국민의 딱한 신세라 하겠지요.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삼류정치가 우리의 삶을 상당 부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이를 변화시킬 힘도 없고 또 그와같은 정치가 변화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이 무더운 여름이 많이 보이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치 때문에 더욱 무덥습니다.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자조도 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개개 정치인을 보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도덕성도 갖추고 있는 것 같으며, 국민을 위한 열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의도에 가서 '정치인 일반'이 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반대로 변해 버리는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야 말로 집단최면에 걸린 것인지, 개개의 선이 모여 더 큰 선을 이루어도 오히려 부족하다 할 판인데, 그들이 모여 이루는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해악만 끼치는 뾰 달린 도깨비 형상일 뿐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머지않아 각 정당과 개인으로서의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

리고 12월에는 어느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 대통령을 꿈꾸거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희망이나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음에도 현재의 진행상황은 그들만의 외로운 몸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치가 예전과 같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국민이 정치권에 보이고 있는 무관심과 경멸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모당의 유력 후보자에 대하여만 국민이 의미 있다고 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마니아층의 일반적인 축제로만 보입니다. 또한 사람, 언론에서 정치권 밖에서 대통령후보군으로 계속 서성대는 것으로 되어있는 그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정체성도 알 수 없으며, 그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어떠한지, 그들을 걱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는 12월 국민의 걱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상화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도 그날 환표를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thlee8008@daum.net

정치인이 되면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인지 모든 이들에게 해악만 끼치는 뾰 달린 도깨비 형상일 뿐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생각하는 숲



박수연 변호사

변호사의 소설 쓰기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장편의 고전소설을 읽다보면 작가는 반신반인(半神半人)의 경지에 이른 천재가 아닐까 생각된다. 천재가 아니고서야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허구를 만들어 내고, 삶의 면면을 그렇게 생생하게 재현해낼 수 있을까. 수백, 수천 페이지에 뾰뾰이 들어찬 문장 중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는 듯 보일 때는 작품의 중압감에 기가 질릴 정도다.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글쓰기와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유감스럽지만 '재능'이라고 말했다니,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소설 쓰기는 한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유혹이다. 변호사만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직업도 드물 것이다. 그동안 마주친 많은 인간군상과 사건 사고들을 그저 준비서면 속에만 묻어두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재판정 방청석에 앉아 내 사건의 순서를 기다리다보면 앞서 진행되는 사건의 수만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 하나같이 절박하고 기막힌 사연들을 줄줄이 풀어내고 있다. 소설의 소재는 이미 지천에 널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딱딱한 문장과 논리에 익숙한 우리가 말랑말랑한 감성을 담은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동안 요건사실에 집중해온 시선을 주변부로 돌리는 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과장되고 장식적인 글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소설 고수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헤밍웨이는 소설을 쓸 때 '가장 진실한 문장 하나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처음부터 장황한 글을 쓰거나, 뭔가를 과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복잡한 무늬와 장식들을 잘라낸 후, 단순하고 진실한 평서문 하나를 쓰라고 권한다. 내가 알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진실한 문장 하나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므로 그것을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소설 쓰기가 어렵지 않는 것이다. 그 처음이 열리고 나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부터는 소설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또 하나, 소설과 같이 긴 호흡이 필요한 글쓰기 작업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글이 잘 풀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을 때, 바로 그

때 중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글의 우물 깊은 곳에 아직 글이 좀 남아 있을 때 그날의 글쓰기를 멈추면, 그 샘에서 밤새 물이 흘러들어 우물이 다시 채워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글이 막히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소설을 쓸 정당한 시간의 확보다. 물론, 그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 한가롭게 소설 쓰기에 할애할 여유가 있을까 싶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면 가능하다. 하루에 딱 한문장만 쓰기로 하자. 아침을 먹으면서, 출근하면서,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문학적 에너지를 쏟아 가장 진실한 문장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감성이 촉촉해진 비오는 날에는 두 문장, 세 문장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문장 이상이 내 작품에 더해지는 것이다.

소설을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글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아름다운 글귀나 좋은 표현이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다. 감성은 더욱 풍부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숨은 메시지와 의미에 관심이 생긴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소설 쓰기에 도전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sypark@seoulbar.or.kr

헤밍웨이는 소설을 쓸 때 '가장 진실한 문장 하나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했다 하루에 딱 한문장만 쓰자 모든 문학적 에너지를 쏟아 가장 진실한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보자

“한국 청년변호사, 국제재판소 · 국제기구에 도전해야”

Interview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권 오 곤 재판관



일본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소하겠다고 나서 국제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휴가차 귀국한 국제유고전범재판소 권오곤 재판관(59)을 만나 국제 사법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인 최초 유엔 산하 국제재판소 상임재판관이 된 지 11년째인 권 재판관은 “독도는 우리가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영토이므로 일본의 제소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응책을 만들어 뒤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일본이 제소하겠다고 나선 ICJ는 강제판할권이 없고 일본인 재판관이 한명 있다. 영토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고 사양했지만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었다.

권오곤 재판관은 유고 내전(1992~1995) 당시 ‘인종 청소(25만명 사망)’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 재판에 이어 1급 전범 라도반 카라지치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카라지치에 대한 검찰 측 증거조사가 끝났어요. 그에 대한 11개 죄목 중 소위 인종 청소와 관련된 제노사이드(인종학살) 부분은 대량 살인이긴 하나 인종말살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스레브레니차와 관련된 제노사이드 혐의는 그대로 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보스니아에선 반발이 커 제 사진을 놓고 화형식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1992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국민투표를 통해 유고슬라비아연방으로부터 독립을 결정하자, 보스니아-세르비아 의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사라예보를 수도로 하는

스르프스카 공화국을 창설하여 연방에 잔류했다. 카라지치는 스르프스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여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아 내전을 주도했다.

보스니아 내전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계속됐고, 이른바 ‘인종청소’라는 학살이 자행된 가운데 약 25만명이 사망하고 3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특히 1995년 7월에는 유엔이 안전지대로 선포한 스레브레니차에서 8000명에 가까운 이슬람계 주민들이 일주일 만에 학살되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자행된 최악의 학살 사건으로 불린다. 카라지치는 잔혹한 ‘인종청소’의 주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수배된 지 13년 만인 2008년 7월 21일 체포되었다. 권 재판관은 25만명을 학살한 혐의를 받은 밀로셰비치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재판에 이어 카라지치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사실 형사사법은 국가주권의 상징이잖아요? 국제사회가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재판할 수 있는가, 국가원수는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형사처벌은 국가주권에 반한다는 논리로 일본이 천황의 전쟁책임을 비켜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는 재판을 진행해 선례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전쟁범죄에 유엔이 단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재판소이다 보

니 재판관의 연임여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사항이다. 권 재판관은 재판소가 만들어질 때 들어가 연임했다 2009년에 임기가 끝났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마칠 때까지 1년 단위로 안보리에서 임기를 연장 중이다. 증인보호, 가석방, 재심 등 잔여업무처리를 위한 ‘잔여업무처리기구’가 내년 7월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유고전범재판소는 161명을 기소해 130여명의 재판이 끝난 상태다.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다 국제재판

한명이 신문조사상 다른 피고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피고인이 증언거부자였어요.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신문조사 전체가 증거능력이 없는가를 두고 몇날 며칠 격론을 벌였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판례가 ICC 등 후세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선례가 될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였죠.”

권 재판관이 국제재판소에서 일하는 의미로 가장 크게 꼽은 것은 ‘재미’였다.

“매일 매일이 새로워요. 선례가 없고 새로운 이슈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며 재판을 하니깐요. 영미법체계와 대륙법체계를 절충해가며 가장 적합한 형사사법제도는 무엇인가 고민하며 만들고 있어요. 제가 주장해서 한국제도를 도입한 것도 있고요. 다른 양 체제에 대해 배우는 것도 많습니. 한국법조인은 양 체제를 절충해가며 재판해왔기 때문에 국제재판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법이 양 체제가 조화를 이룬 것이어서요.”

서울법대 수석 졸업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수석이었던 권 재판관이 국제재판소에 갔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었다. ‘남들 하는 대로’ 재판하며 살면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있음에도 왜 굳이 언어장벽을 감수하며 미래도 불투명한 일에 도전하는가에 대한 우려였다.

처음에는 발음이니 문법이니 생각하며 되도록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30분 후 전 세계로 중계되는 상황에서 ‘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는가’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재판관 호선으로 선출하는 부소장직에도 오를 수 있

밀로셰비치 前 유고대통령 이어 1급 전범 카라지치 사건 재판장 맡아

영미법, 대륙법 조화에 능한 한국법조인 국제 재판서 기량 발휘 가능

국제재판하며 보여지는 정의, 형사사법의 선진적 제도 등 많이 배워

소 재판관이 된 권 재판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정말 형사소송법의 규칙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역사이기에 실제적으로 철저히 지켜진다는 것이다.

“범인 10명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효율’을 위해 슬며시 무시하는 원칙들이 정말 다 지켜지더군요. 도도한 형사절차의 물결에 실제로 자기가 말려들어갔을 때 제대로 자기를 방어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존중받고 피고인의 경우도 진술을 거부하면 판사, 검사가 한마디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철저히 지켜지고요. 최근 저희 재판소에서도 피고인 7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단계에서

었다. 워낙 밝고 쾌활한 성격이라 적응도 빨랐던 것 같다.

“제가 판사 시절에 청와대 파견근무도 했었어요. 그 때 옆방에서 일하던 외교관 한분이 저더러 세계의 판사가 되라 하셨어요. 그 때는 무슨 말이었는지도 몰랐는데 ICJ 판사가 되란 뜻이었어요. ICTY 재판관 소개책자에 ‘ICJ 판사와 동일한 대우’라고 되어 있어 웃었죠. 제 배석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가 이메일로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후, 우리도 헤이그의 국제재판관을 내어야 한다고 여행기를 보낸 것도 마음을 움직였어요.”

대부분이 말리던 재판관을 수락하고 헤이그로 떠난 배경을 웃으며 설명해주었다. 그런 것들이 다 운명이고 인연이 아닐까.

정창호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법재판소(ECCC) 재판관으로 갈지 여부를 고민할 때도 주저 없이 “꼭 가라”고 말해주었다. 정 판사가 속한 ECCC는 프랑스식 대륙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더욱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술심리, 직접주의에 의존하는 영미법제도로는 복잡다기한 국제 형사재판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아 ICTY에서도 대륙법체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

좀 어려운 질문을 해보았다. 현재와 대법원, 양 기관에서 엇갈리는 결정이 나와 요사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해주고 의견을 물었다.

“글쎄요. 양 기관이 겸양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5공화국 헌법을 만들며 ‘헌법재판’ 기능을 놓고 대법원 스스로가 정당해산권, 탄핵권 등이 부담스러우니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맡기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헌법재판소의 연구부장을 할 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나와 마음고생을 했던 것도 기억이 새롭네요. 현재가 많은 훌륭한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하부기관화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골고루 거친데다 일을 즐기는 성품으로 후배들이 많이 따랐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항소부장으로 있던 1999년이였다. 소액사건의 항소심이라 기삿거리도 거의 없고 기자가 방에 들

르는 것도 귀찮아하던 시절인데도 성의를 다해 설명해주던 모습이 이제로왔다. 못 알아듣는 기자를 위해 화이트보드 위에 그려가며 사건을 설명해주면서 개요, 의의를 재미있게 설명해주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서민들의 소액사건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대법원 판결을 따라 가기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판례를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보통 판사는 아니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 들어가 보면 전 주인이 밀린 아파트관리비 고지서가 기다리기 마련. 경매대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의외의 비용에 놀라 재판을 해보지만 예외 없이 내야하던 시절, 부당하다는 생각에 연구를 거듭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내야 하지만 전 주인이 사용한 부분은 대신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이뤄낸 판결이 됐다.

이런 판결을 하던 권 부장판사는 수만명을 학살한 전쟁책임자를 재판하게 됐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훌륭하다는 건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것이 국민의 마음 속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밤을 새워가며 노력해 판결한 것이니 믿어달라’는 결론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국제재판을 해보니 기록을 애초에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더군요. 비실명처리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과 실명 그대로 표기해 재판부가 검토하는 것으로요. 재판의 전 과정은 생중계나 마찬가지로 공개돼요. 후시 보호해야할 증인 실명이 나오는지 등을 검토한 다음 홈페이지로 공개

되니까요. 대략 30분 후면 전 세계가 보는 셈이죠. 정의는 정의가 구현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대한변협이 판결문공개를 계속 주장해온 것도 바로 그 이유다.

우리 법조계는 국제화에도 좀 더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권 재판관이 있는 ICTY만 해도 인구비례나 유엔 분담금 비율을 보더라도 1000명 직원 중에 한국인이 6명은 되어야 하지만 1명뿐이다. 일본이 ICJ 제소를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해 15자리인 ICJ 재판관 중 3자리인 아시아 뒷재판관을 계속 배출해왔고 소장까지 배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권위가 있는 국제법 교수들을 의무성 자문위원으로 확보하고 영토분쟁 전문가도 많다. 아무리 독도가 우리 땅이라 해도 국제사회, 국제재판에 적용되는 룰대로 말하지 못하면 힘들어진다는 것을 스포츠경기를 통해서도 느끼지 않았던가.

좀 더 많은 법조인이 국제재판소와 국제기구에 도전하고 진출해야 한다.

“여름에 3주, 겨울에 3주는 재판소 전체가 같이 쉬는 휴가이고 재판부별로 조정해 1주일의 휴가를 가져 1년 중 7주의 휴가를 쉰다. 처음엔 좋더니 점점 불평하는 대열에 합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ICJ는 1년에 8주 휴가거든요. 7주나 되는 휴가를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더군요. 더군다나 재판을 몇 건 하느냐고 물어봐서 1건 가지만 몇 년째 하고 있다고 말하면 믿을 수 없어 합니다. 하하.”

그러나 이국에서 새로운 제도, 낯선 언어



로 재판하는 것이 쉬울 수는 없을 터. 세 남매를 데리고 간 미국생활은 애초의 예정보다 길어졌고 중고생이던 자녀 중 큰딸은 결혼해 손녀를 안는 기쁨도 맛보았다. 둘째딸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막내아들은 최근 군입대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신체검사를 마쳤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뒷바라지에 집사람이 몇 년 동안 ‘비행소녀’가 됐었다고 웃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은 퇴임 이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신했다. 그의 경력과 경험은 한국 법조계가 가진 자산이다. 선진적인 사법제도에 대한 그의 체험을 한국에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 박신애 편집장

클래식과 친구하기



하죽봉 변호사

감상의 방법

클래식 음악을 오래 듣다 보면 들린다는 느낌이 오면서 좀 체계적으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고도의 이론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결과물이므로 무조건 많이 듣기만 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지요. 여기서는 음악 감상의 태도랄까 방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미학 이론가인 하르트만은 가벼운 자기 위안을 찾거나 자기의 기분을 달래기 위한 감상과 엄밀하게 음악작품의 구조를 존중하고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성된 복잡한 전체를 정찰한 뒤에 비로소 몰두하는 감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는 잘 알다시피 논어 옹야장에 나오는 문구로, 음악 애호가인 공자가 음악에 관하여 언급한 감상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하르트만의 두 가지 방식 중 전자, 즉 가볍게 접근하는 감상태도와 유사합니다. 공자의 이 문구는 당연히 음악에만 한하지 않고 예술 전반에 대한 감상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본의는 탐닉하기 쉬운 음악(또는 예술 및 취미)에 대한 군자의 태도 또는 가이드라인을 반의적으로 정해준 것이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

모든 사물을 개념적으로 이해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 법조인에게에는 음악도 즐기기에 좋아해야 하고, 좋아하려면 먼저 알아야 된다는 자세, 즉 하르트만의 두 번째 방식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알고난 뒤 좋아하고 좋아한 뒤 즐긴다는 자세는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서이지 프로의 경지에 나아가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작곡가의 생각과 당시 시대 상황, 유사곡과의 비교, 음악사상 평가 등은 기본으로서 해설서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서두의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듣는가로 다시 돌아가, 시중에 나와 있는 클래식 음악 해설서는 필수적입니다. 듣는 차례는 어떻게 할까요? 장르별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교향곡, 관현악곡, 협주곡, 실내악곡, 기악곡, 성악곡, 오페라, 바로크음악의 순에 따르고, 교향곡은 예컨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 베를리오즈, 프랑크, 브루크너, 말러, 시벨리우스,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 등의 필청곡이라고 하는 곡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 필청곡을 일순하면 현악, 실내악의 순으로 넘어갑니다.

교향곡은 관·현·타악기를 모두 사용하는 관현악곡의 대표격으로 이름 그대로 모든(울리는 또는 소리를 내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클래식 음악의 장르 중 으뜸이 되고 따라서 작곡가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므로

하이든이 이 형식을 확립한 이래 교향곡 1편은 내놔야만 작곡가라고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베르디, 바그너, 푸치니, 도니체티와 같은 오페라 작곡가는 교향곡을 남기지 않았지만 인성과 기계음을 극도로 조화시키는 오페라 작곡가라면 교향곡의 명곡도 남길텐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한, 중, 일 모두 사용하는 교향곡 또는 교향악이라는 단어를 독일어에서 처음 번역한 사람은 일본의 소설가인 모리 오가이(1862~1922)입니다.

관·현·타악기만 사용하는 교향곡의 확립된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합창 불음’이라고 돼있는 9번에 독창과 합창을 넣은 베토벤은, ‘천재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명언을 새삼 떠올리게 합니다. 슈베르트와 브람스, 브루크너를 잇는 독일 교향곡의 전통은 다시 관현악 일반도로 돌아갔지만 말러에 의하여 인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번(부활)의 합창과 4번의 독창 악장을 관현악으로 대체하면 그 맛이 안 날 겁니다. 또 하나 교향곡의 편성 악기 중에 건반악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 생상의 ‘오르간 교향곡’ 이고 댄디의 ‘프랑스 산사람의 노래’ 교향곡입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비제의 1번과 위 2개 교향곡은 글로 표현하기 힘든 프랑스인의 기지(esprit)를 느끼게 합니다. 특이하게 본 윌리엄즈의 7번(남극)은 남극 탐험대장 스코트의 일기 등 내레이션이 붙어 있고 쇼스타코비치의 14번은 독창이 들어가나 관악기는 빠진 곡으로서 교향곡의 명곡을 섭렵하신 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jbha777@yahoo.co.kr

가벼운 자기 위안을 찾거나 기분을 달래기 위한 감상법과 엄밀하게 작품의 구조를 파고 들어가 복잡한 전체를 정찰한 뒤 비로소 감상에 몰두하는 방법이 있다

제21회 변호사대회 심포지엄I - 변호사 공익활동의 성과와 개선 방향

공익전담변호사 활동 및 지원 방안



염형국 변호사

변호사의 공익활동, 그 인식의 차이

변호사 직무 자체가 곧 공익이라는 주장에 국민은 더 이상 공감하지 않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조 자체의 이익과 기득권에 연연해 오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지울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법조 분야도 서비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과 맞물려 진행된 법조계의 대응은 법조인들이 지역 수호에만 연연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익 전담변호사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들

최근 법무부에서 공개한 변호사법 개정안에서는 공익법률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으로 법무법인(공익) 제도를 신설했다. 법무법인(공익)은 일정한 실비 이외에 공익 법률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또한 법률구조적 성격으로 공익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다. 공익 전담변호사단체의 경우 비영리공익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등록형태와 실제 조직 형태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비영리재단법인 등이 공익변호사에게 재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또는 운영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공익 전담변호사 지원방안

공익법률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 조직의 근거를 변호사법에 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법무법인(공익)

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이 만든 신생 공익 전담변호사조직은 최소한 5년이 경과하고 3명 이상이 결합하여야 변호사법에 근거한 조직이 될 수 있다. 그외에 다양한 형태의 공익 전담변호사 조직과 개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공익전담변호사의 형태 또한 변호사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한 법률구조 외에도 구조적인 이유로 차별받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자를 위한 법률지원도 공익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등 공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법률구조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전문인력인 공익법무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구조단체단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소와 3억원 이상의 자산 보유’, ‘변호사 3인 이상’,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업무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 ‘상담직원 2명 이상’을 갖추 것을 요구하는 등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재 이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단체는 대한변협의 법률구조재단과 가정법률상담소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적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한 법률구조단체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대폭 확대하여 민간에서의

법률구조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시스템은 로스쿨 학비 탕감제도이다. 이는 미국 내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로스쿨 입학생 중 공익전담변호사로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로스쿨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학비탕감 제도가 공익변호사를 지망하는 로스쿨생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 공익전담 변호사 임금지원제도는 실제 공익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로펌 스캐든 압스는 해마다 로스쿨 졸업 예정자 가운데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할 학생들을 다수 선발해 2~3년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전체 변호사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손쉽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을 수 있고,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단체도 수월하게 자신을 지원해줄 변호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변호사들을 위해서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익 영역에서의 정보인프라를 통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선배변호사와 후배변호사와의 협력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 공익활동증가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로펌 공익활동의 한계

그동안 로펌에 대해서는 회전문인사, 전관예우, 이익충돌, 내부자고발, 탈세, 매출액 비공개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로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다. 그렇다면 기부나 공익활동으로 로펌의 사회적 책임이 대체될 수는 없다.

예컨대, 회전문 인사로 공정한 법치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로펌이 사회 복지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독거노인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로펌 내의 여성변호사에게 일과 가정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근로조건을 강요하면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로펌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기본은 로펌이 ‘법의 지배’가 정착되는 것에 일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로펌은 변호사법에 언급되어 있는 기본적인 변호사의 책임인 인권옹호, 사회정의실현, 독립적 직무수행, 품위유지, 비밀유지, 독직행위 금지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1) 로펌 내 이익충돌문제의 해결에 관련한 시스템 확충, 2) 위법행위 발견 시 대응, 3)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국적 맥락에서는, 4) 불공정한 전문가 활용의 금지(회전문인사와 전관예우 근절 등)가 필요하다고

로펌의 공익활동과 개선 방향 :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론

할 수 있다.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자문이나 소송대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위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도 로펌의 자율통제절차를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은 복수의 변호사가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위법행위를 알게 된 변호사는 그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그 일에 관여한 변호사들 스스로 위법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단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로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고, 이를 위한 내부 규범, 절차, 조직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로펌은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법적, 윤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른바 회전문 인사와 전관예우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대 대형 로펌’에서의 여성변호사 현황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석하고, 로펌 여성 변호사(로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여성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여성변호사 중 38%는 취업 시 결혼 여부나 계획, 배우자의 직업, 임

신/출산 여부나 계획, 용모 등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과도한 업무 속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고, 고객이나 동료들로부터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로펌 채용에서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로펌의 채용에서 공개채용보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력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유력 인사의 자제를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로스쿨에 정치인, 법관, 교수, 기업인 등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이 많으며, 심지어 로펌 대표의 아들이 로스쿨에 들어가 ‘가업 대물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 로펌의 사회적 책임: 과제와 전망

요컨대, 로펌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변호사직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고, 공익활동이 강화되어 온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공익활동의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원용한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펌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자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각하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로펌도 무한경쟁에 내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조만간 로펌의 순위를 제공하는 기관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항목에 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펌이 사회적 책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모든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의무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제21회 변호사대회 심포지엄II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법률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 확대 노력



이병주 변협 기획이사

국내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의 계기로 좋게 발현될지 아니면 법률시장의 지나친 생존경쟁과 혼탁화의 어두운 면으로 귀결될지는, 각 개인 변호사들의 노력과 대한변협 등 법조계 전체의 집단적인 노력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될 것이다.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대한변협은 2011년 3월 14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긴급 연석회의를 가지고, '2012년 신규 변호사 실업대란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우선 '사회 각 영역의 법치주

의 심화, 확대 방안'으로 (1) 법원, 검찰, 국회에 로클릭(법률연구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신규 변호사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2) 상장기업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한변협이 제안한 '국민밀착형 법률서비스 확대방안'은, (1) 전국 229개 시·군·구와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전국 200여개 일선 경찰서에 변호사 생활지원관(호민관)을 임명하는 방안과 (2)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보험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각 제안 내용 중 법원의 로클릭 제도와 상장기업 준법지원인 제도는 2012년 상반기 중에 도입이 확정되었고, 일선 시·군·구 및 경찰서의 호민관 제도는 법무부와 관계 기관들과 함께 논의·연구 중이며, 법률보험 제도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다.

신규 법조인력 배출 이후의 현황 및 과제

금년 4월 로스쿨 출신 졸업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과연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어느 정도의 인원이 법률종사기관에 취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협 연수에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 섞인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8월 현재 수강생은 200명 대로, 다행히 우려했던 법조인 실업대란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변협 6개월 연수를 받지 않고 있는 약 1200여명의 법률종사기관 종사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질적, 안정적으로 취업을 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한 상황은 연수기간이 경과한 10월 이후에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협은 지난 3월부터 법무부와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협의회와의 협력, 지원을 받아 온라인 '변호사취업정보센터(career.koreanbar.or.kr)'를 개설하고 6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변호사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오는 구직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변호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저변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종의 시장기능 작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규 법조인력의 증가가 현실화되면서 이전에는 변호사 채용을 부담스러워하던 중소기업체들도 적절한 비용으로 우수 법조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으며,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법조인력을 더 많이 채용할 필요성을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변협은 전문가자격사 동업제도 논의, 법률보험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신규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규 법조인력이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진출분야로 가장 유망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신규 법조인력들이 굳이 사내변호사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우수전문인력으로 기업체 및 민간단체에 취업하여, 리걸 마인드를 가진 기업가, 은행가, 사회활동가 등으로 그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규 청년 변호사들이 지역 주민들에 봉사하는 법률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구의회, 시의회 등 지방의회,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근거로 한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라면, 초기의 몇달 몇년은 힘들더라도 법률과 일반 시민활동을 포함한 전반적 종합적 활동을 통해 지역에 뿌리박고 다른 주민들과 함께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을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변호사상의 정립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며, 충분한 경쟁력과 사회적 기여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변협은 신규 청년 변호사들의 지역 봉사 및 지방자치 참여를 중점적인 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청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학교'를 개설해 변호사들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자신의 생존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법률 관련 지역 간의 갈등과 통합 문제

변호사의 경우 전통적인 업무영역인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헌법소송에 치중한 결과,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특허, 세무, 노무, 관세, 출입국관리 등이 법률관련 법조유사지역들에게 침탈당하고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해 2500명에 이르는 신규변호사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법조인의 수가 향후 6~7년 사이에 법조60년간 배출되었던 전체 법조인의 두배에 육박하는 초단기 과잉공급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법조시장 내부의 혼란은 물론이고 법률관련 지역 간의 사활을 건 영역싸움이 끝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관련 유사 지역들의 갈등 야기

변리사의 경우,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은 변리사법에 이미 주어진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공동소송대리권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로비는 물론이고, 범과학계·산업계를 동원하여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소송대리권 탈취에 앞뒤를 가리지 않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법무사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대한법무사협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소송대리권을 얻어내겠다고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사의 경우, 변리사, 법무사들의 변호사지역에 대한 침탈 전면전을 틈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동시취득제도를 배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세무 관련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00만원 이하 소액 민사소송사건의 대리 또는 대행권을 포함시켜 노무관련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권을 얻기 위해 국회로비가 한창이다.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법 개정을 통하여 관세사의 전속적 직무에 '원산지 결정업무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포함시켜, 변호사가 원산지 결정업무에 관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 업무 영역 침해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출신들의 경우, 소위 심부름센터, 해결사의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명목아래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을 통하여 경비업법안과 민간조사업법안을 만들어 변호사 업무영역을 잠식하려는 도전을 하고 있다.

유사 지역간의 갈등 해소 방안

현재 변호사와 다양한 법률관련 유사지역이 존재하는 법조인력 구조는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국민 부담의 최소

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명제아래 대대적인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논의로 법조와 법조유사조직 간의 내부적인 공존의 측면인 전문자격사간 동업허용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유사 법조지역의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해 볼 때가 되었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논의가 한창이고, 법무부 입법안이 마련되어가는 중이다. 법무부와 변협은 전문자격사간 동업 문제에 대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범위는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에 한정하고 있다. 변협에서 실시한 회원들에 대한 전문자격사간 동업허용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답변 회원 955명 중 찬성 회원 453명(47.4%), 반대 회원 451명(47.2%), 유보 회원 51명(5.3%)로, 어느 한쪽의 논리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변협은 전문자격사간 동업허용문제와 관련하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법조지역 뿐만 아니라 법조유사지역의 근간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특정 소수만의 관심이나 논의만으로 결론을 도출해서 안 되고,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회원들



조순열 변협 부협회장

이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풍부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변협은 원칙적으로 법률관련 지역 간 갈등의 해결 방향을 법률유사지역의 일원화로 잡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변호사와 유사 법조지역 사이의 갈등 해소 방안은 로스쿨 제도로 통폐합되는 법조인력 일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 직무영역과 유사 법조지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그 중첩되는 영역을 철저히 없애고, 로스쿨 제도의 폐지 논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21회 변호사대회 심포지엄II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공공분야에서의 법치주의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



김성만 변호사

'공공분야'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광의적이고 포괄적이다. 그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 준공공기관 등 거의 모든 분야가 공공분야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행정부와 준 공공분야인 공기업 등을 공공분야로 한정하기로 하고, 이러한 공공분야에서 법치주의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논의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및 사회의 급격한 변

화는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반면 국회의 법률 제정 및 심사 능력은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행정입법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명령에 대한 위임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위임이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지도, 행정 계획에 의한 행정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치주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주로 수행해 왔던 역할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 적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어느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돕는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통적인 변호사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부의 행정작용, 특히 행정입법 과정 및 행정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참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

일반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법의 지배를 논하는 것은 실은 별 의미가 없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년 국민법외식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60% 이상이 우리나라가 법을

안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본인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다수(9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은 법을 지키되 다른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인 인식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일반국민의 60% 이상이 우리나라가 법을 안 지키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변호사 단체에서는 검찰, 경찰의 공정성, 친절성, 법 준수 의지 등을 보다 광범위하게 평가하고 늘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앞으로 각종 정부입법에 대하여 대한변협 및 각 지방 변호사회에서는 각종 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강화하여, 법치주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법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상희 교수가 쓴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 법의 지배에 기반한 사회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에 따르면 변호사는 업무 자체가 그 사회의 법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밖에 없으며, 각 국가별로 변호사의 수로 대표되는 법률서비스 전달체계가 그 국가의 법치와 인권의 실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변호사 수를 통해

서 각 나라의 법치주의 확립 수준을 평가하려는 아이디어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 방식이라는 비난을 면치는 어렵다.

다만, 공공분야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사 혹은 변호사 단체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집단을 구성하고,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그 문제들의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나아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법에 의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관심을 끈다. 사실 그 동안 변호사회회 혹은 변호사단체 등이 공공분야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얼마나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견해를 밝혔는지를 살펴보면 솔직히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 특히 공공분야에 있어서 법의 지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들을 예리하게 또한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각오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세내기 변호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저자에게 듣는 책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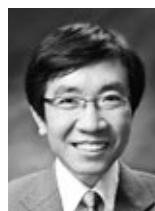
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이영애(사시 13회), 세창출판사

이 책은 지난 3년간 생명포럼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주제 중 낙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서다.



'논쟁'과 '현실'로 나누어 인간의 생명가치가 가져야 할 법률적 지위에 대해 묻는다. 배아와 태아는 점차 법적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보호 필요성도 거론되는 시기에 정작 인간의 생명은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며 우리 형법도 낙태죄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태아의 개념을 '임태시'부터 인정하여 수정 이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있다. 그 규범적 모순은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낙태자유화'와 같은 위험한 구호가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서 배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생명가치가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사시 26회), 진원사

이 책은 민법의 주요 조문 순서에 따라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망라해 검토하며 그 조문과 관련된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주요 조문별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도 일부 더했다. 대법원 판례는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 그리고 추상적 법리에 관한 판시 부분만으로는 참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각주를 통해 구체적 사안까지 상세히 담으려 했고, 판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오독·오해의 여지를 경계했다. 파기환송판결의 경우 환송 전 원심의 판단도 담아 대법원의 판단과 대비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서로 배치되는 판례, 사실상의 판례변경으로 유효하지 않게 된 판례, 명백한 오류가 보이는 판례 등은 해당 부분에서 사건을 적시함으로써 판례의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형사법 연습

이창현(사시 29회)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법률저널

이 책의 '판례검토' 편에서는 형사법의 중요판결을 정리하고 검토의견까지 넣어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



의견의 입장 차이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주장까지 밝힐 수 있게 함으로써 판례의 이해와 함께 법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례형 연습' 편에서는 형사법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통해 근거규정이나 판례 및 학설을 이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는 능력을 고양하고 많은 참조판례를 정리해 유사사례 해결에도 활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록형 연습' 편에서 변론요지서 등 형사소송과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판례와 사례를 통해 익힌 실력을 문서에 담아서 완성해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기재레까지 실어 문제의 경향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언제든지 비슷한 내용이나 관련 내용이 다른 유형으로도 출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분쟁관계법

윤성철(사시 40회)·이상엽(사시 46회),

도서출판 법과교육

평소 건설과 부동산 소송 및 자문을 하면서 '상가'에 대한 전문서적의 필



요성을 절감했다. 이 책은 집합건물로서의 상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최신 판결 및 공정위 심결례를 통해 ①상가개발 및 분양, 상가분양계약체결, 상가신탁문제 ②상가관리운영단계 ③상가 멸실 후 재건축단계라는 세 흐름에 맞춰 실무에 필요한 법리와 분쟁사례를 담았다. 상가 관련 법적문제를 조명한 최초의 단행본으로서 특히 상가분양계약의 법적 성격, 분양계약체결하자과 수분양자 구제방안으로서의 계약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의 문제, 2012년 개정신탁법과 상가부동산신탁계약의 문제, 상가동종업종제한에 따른 분쟁 판례 등과 상가구분소유자 공용부분 분쟁 등 상가구분소유관계 및 상가관리단 운영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또한 실무에 유용하도록 상가분양표준계약서, 상가관리단 표준 규약을 실었다.

주요판결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 7. 17. 선고
2011나38259 판결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다음 채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대여금 청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제3자 C는 채무자 B로부터 위 가압류가 기결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B와 수익자인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수익자 C는 채권자 A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 후 수익자 C는 위 가액배상 판결에 따라 위 가액배상 상당액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하였는데, 다시 채권자 A가 위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채권액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익자 C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수익자 C가 채권자 A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청구이의, 예비적으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또는 그 승계인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자(민사집행법 제25조)가 원고 적격을 갖고, 이들의 채권자 역시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 확정판결의 집행권원상 채무자인 B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C를 위 집행권원상 채무자로 표시된 B의 승계인 또는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자라고 인정할 여지도 없을뿐더러, 달리 이 사건 대여금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한 청구이의를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구할 어떠한 피보전권리를 C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C로서는 청구이이의 소를 구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청구이이의는 C가 이 사건 대여금 확정판결의 승계인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제3자이이의는 C가 이 사건 대여금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로서 그 각 청구 자체로 보더라도 이들은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청구의 주위적, 예비적 병합은 적법할뿐더러,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 참조), C가 이처럼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사유 역시 있다고 인정되므로, C의 청구 병합의 적법성을 다투는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제3자이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참조), C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대여금 확정판결 또는 그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C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써 적법하게 제3자이이의의 소를 구할 수 있고 그러한 소에 관하여 원고적격을 갖는다.

제3자이이의의 소 본안에 대한 판단

수익자 C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 A의 경우 채권자가 원래 그 취소로써 당초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만약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의 경우라면 위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A의 위 가압류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말소등기와 함께 말소될 운명임으로 결국 피보전채권의 전액 변제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채권자 A를 상대로 채무자 B에 대한 위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제3자이이의 청구는 이유 있다.

매매대금반환 등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A가 구매한 수입자동차는 인도 후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점검 결과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여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A는 '계기판을 교체하는 보증수리' 제의를 거절하고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

자동차 판매와 같은 종류물 매매에 있어

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고, 다만 하자가 경미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수입자동차 제조회사(또는 한국자동차)가 자동차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위 품질보증서 교부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회사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자동차 제조회사는 그 판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와는 별도로 소비자에 대하여 신차 교환, 무상 수리 등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안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수입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지 5일 만에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 이 사안에서, 위 하자가 경미하거나 또는 신차 교환으로 인하여 매도인 측에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자동차의 판매회사와 수입자동차 제조회사로 하여금 연대하여 소비자인 A에게 완전물급부로서 신차의 인도와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0구합1611 판결

A는 육군에 입대하여 90mm 무반동총 사수로 복무하던 중 휴한기 훈련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위 무반동총에 오른손이 깔리는 상이를 입었다. A는 B보훈지청장에게 군복무로 인하여 우측 손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PRS)의 부상을 입었음을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B보훈지청장은 A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할 만한 분쇄골절, 좌멸창 등 분명한 외상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통지하였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창원지방법원은 "A가 이 사건 상이로 입은 외상은 좌상 등으로 경미한 편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작은 손상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A는 국군수도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수차례에 걸친 의사의 진단결과 일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을 받은 점, A는 이 사건 상이 직후부터 일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하는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A는 군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유사한 기왕증을 앓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공무수행 중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상이와 복합부위통

증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 경험칙상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사정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춘천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2고합19 판결

A는 아파트 1층 입구에서 B(여, 3세)의 얼굴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B의 엉덩이를 때려 아동·청소년인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은 "① A가 피해 아동인 B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B의 진술이 A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에 의하여 암시되었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A가 피해자의 불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A가 B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와 같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표현행위가 과거 큰 비난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의 인식에 비추어, 피해 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피고인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다.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A 등은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B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 경우 B 회사는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서울중앙지법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B회사는 A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 실행과정상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새 법률을 소개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8. 13. 일부개정 / 2012. 8. 18. 시행

-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 약관뿐만 아니라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등에 상관없이 불공정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또는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불공정한 약관이나 그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록 하였다.

-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하며, 별도로 저장·관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금지하였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8. 17. 일부개정 / 2012. 8. 18. 시행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또는 누출될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지체 없이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8. 13. 일부개정 / 2012. 8. 18. 시행

-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지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 사기(詐欺)사이트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호스팅서비스(사이버물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료 요청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 통신판매중개 시장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결제대금만 수취하고 재화 등을 배송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통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사기(詐欺)사이트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호스팅서비스(사이버물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료 요청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 통신판매중개 시장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결제대금만 수취하고 재화 등을 배송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통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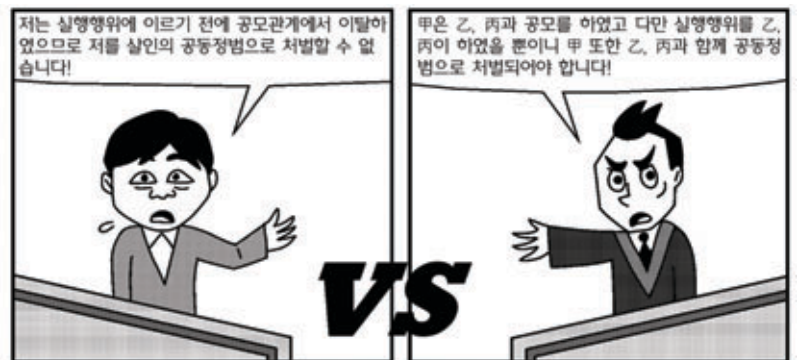
2012. 8. 16. 전부개정 / 2012. 8. 18. 시행

- 방문판매 목적을 숨기고 영업을 하는 홍보관, 체험관 등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규제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과 재화 등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만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만 방문판매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보았으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행위 등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봄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된 형태의 방문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 정리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 347 판결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판례 쟁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공모자 중 일부가 실행행위에 나아가면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다른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경우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그 이론적 근거는 범죄를 공모한 자는 일심동체가 된다고 하는 공동의사주체설이다. 공모공동정범은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해오는 개념이지만(앞에서 보듯이 최근에는 대법원이 공모공동정범에서도 범행지배를 요구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판례는 예외적으로 다른 공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갑이 자의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살인음모죄의 죄책만을 지게 된다.

총평

공모했다면 공범들이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해라! 실행의 착수 이후엔 해박야 소용없다.

글 :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원장 / 그림 : 이영욱 변호사
출처 : 만화 형법 판례 “형법각론” 【법률저널】



양삼승 변호사의 法街散策 독자에게 드리는 마지막 글

한 스토아 철학자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어디로 향할지 예측 불가능한 짐마차에 묶여있는 개와 비슷하다. 우리를 묶은 사슬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움직임 여유를 줄만큼 길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다.”

이 비유는 당연히 나에게도 적용되었다. 개인적인 성장배경으로 법관의 길을 선택했던 나는, 정년까지 그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묶인 짐마차는 나를 전혀 다른 곳으로 끌고 갔다. 25년째인 1999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태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저격당하여 낙마하는 불행을 겪은 후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직업인으로서의 황금기인 50대의 10여 년간 변호사의 업무에 전념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보람찬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2009년 이번에는 나를 묶은 사슬의 범위 내에서 순전히 개인적인 사연으로 변협의 부협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변협의 업무도 알게 되고 나름의 비판적 안목도 생겨났다. 그동안 가끔씩 법

조계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일간지에 기고하기도 하고 논문형식의 발표도 했다.

그러다 보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나은 법조계를 만들기 위한 평소의 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데에까지 생각이 미쳤다. 이렇게 하여 대한변협신문에 ‘법가산책(法街散策)’이라는 이름으로 지면을 얻어 격주로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1년 반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격주로 글을 써내는 것이 힘들기도 하였으나, 한편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공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모든 좌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인류의 위대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못했

을 것이다. ‘이것이 꼭 이런 식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인류가 가진 독창성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런 물음에서 모든 개혁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글은 전부 이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우리의 법조현실이 꼭 현재와 같은 이런 식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법조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고, 우리가 존재하는 더 나은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 까?”라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제 40년의 법조인생이 지나면서 형성된 나름의 견해를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리

는 것이 우리 법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적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 결과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2% 정도는 적을 수 없었다. 여기에는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너무나 내밀하여 차마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이 부분들은 끝까지 혼자 마음 속에 안고 가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어온 내용들은 전적으로,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끝으로, 괴테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1년 반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는 “나의 활동에 보탬이 되거나 직접적으로 활력을 주지 않고, 단순히 나를 가르치기만 하는 모든 것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고 이야기했다.

나의 보잘것없는 이 글을 읽어오신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만족을 얻는 데에 그치지 말고 천천히라도 조금씩이라도 행동과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감히 부탁 드리고 싶다. 경제적 부와 마찬가지로 정의 역시 갖고 두고 투쟁하여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유익하고 행복하였습니다.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ssyang@hwawoo.com

이것이 꼭 이런 식이어야 하는가?

고 생각한 대로 적어온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염려가 항상 나를 따라 다녔다. 하나는, 이제 덕담(德談)이나 하고 지내야 할 나이에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논리로서 따지고 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가라는 의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있는 그대로 적는다는 명분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게 피해가 가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속고 끝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즉 덕담을 넘어 쓴소리를 사심 없이 정리해 두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화돼야



이창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길어만 보이던 방학도 어느새 지나가버리고, 다시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었다. 내년 1월에 입학할 5기들을 위하여 입시설명회가 열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받아들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가 어디일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로스쿨을 지원하면서, 로스쿨은 사법시험을 거치는 것보다 변호사가 되기 쉬운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정원에 비해 합격률이 비교적 높아보였고, 적어도 그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다. 이제 필자도, 새로 입학하고자 하는 이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지워버리게 된 것 같다.

어느날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로스쿨 갔으면 이제 변호사 다 된 거 아니야? 예전 사법시험 봐야할 때보다 너무 쉬워진 것 같아”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난다. 예전의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하구나 하고...

그러나 합격률 75%의 보기좋은 포장 속에는 많은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암초는 로스쿨 입학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평균 4대 1 이상의 높은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대비, 영어성적,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 등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시간에 비례하여 결과가 향상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의 평균적인 학업능력들을 고려해보면 이를 통과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어렵게 합격을 하고 나서도, 낮은 학점을 받으면 학사경고를 받거나 유급제도를 통해 도태된다. 특히 비법학전공자의 경우 학업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취지와는 다르게,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날개를 접어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 암초는 졸업시험 제도이다. 각 로스쿨에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졸업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시험 합격이 불투명한 학생들의 졸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1기들의 졸업 때 합격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졸업시험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겠지만, 합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2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졸업하지 못하는 로스쿨생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더라도 어려움은 또 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보다 준비하기 더 까다롭다. 사법시험은 기본삼법과 선택과목을 선택형으

로 하루에 치르고, 합격자에 한해 7법에 대한 사례형 시험을 치르는 반면, 변호사시험은 7법을 두세 과목씩 엮어서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형태로 하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각 과목별 통합문제가 출제될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를 다른 기간에 치르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모든 시험을 한번에 치르게 되니 부담이 크다.

합격률의 산정도 문제가 있다. 입학정원의 75%라고 하는 법무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와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자퇴, 휴학 등의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이들로 인하여 합격률이 90%에 가까웠던 반면, 1기의 결원을 추가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2기 이후의 입학정원은 실질적으로 220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인데, 똑같이 2000명을 기준으로 75%의 합격률을 결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합격률을 낮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등으로 인하여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로스쿨생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이 적지 않다. 우리 모두 능력있는 법조인들로서 선배님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고, 변호사자격이 가치있는 것이길 바란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암초들을 잘 극복해내었다면,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저 많은 장애물들이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면 말이다.

cptleecm@gmail.com

2기 이후의 입학정원은 실제로는 220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00명을 기준으로 75%의 합격률을 결정한 것은 결국 합격률을 낮췄다고 봐야 한다

제 3 회



★ 전국학생 인권문예대회

취 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이하여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국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주 제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아래 인권 분야 중 택일
 가. 폭력 문제(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체벌, 언어폭력, 여성·아동(성)폭력, 가정폭력 등)
 나. 학교보건(급식, 불량식품 판매 등), 학습권, 교육환경
 다.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라. 알권리, 표현의 자유(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두발 복장규제 등)
 마. 환경과 관련된 내용(기후변화, 환경보호, 녹색성장 등)

응 모 분 야 글짓기
참 가 대 상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규 격 원고지 10매 내외(한글 프로그램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분량 확인)
 파일명은 '중등부 or 고등부 / 성명 / 주제' 로 (예: 고등부 / 홍길동 / 환경을 보호하자) 작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http://www.koreanbar.or.kr/>)에서 글짓기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응 모 기 간 2012년 7월 20일 ~ 10월 12일
응 모 방 법 이메일 접수(humanrights@kba-humanrights.or.kr)
 접수 확인 문의: 대한변협인권재단 오수미 02-3477-2022
 대회 진행 문의: 대한변협 인권과 권진아 02-2087-7732

- 참 고 사 항**
- 입상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저작권 등)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귀속됩니다.
 - 출품된 작품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타 공모전에 수상한 작품 또는 상업용 작품은 수상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상 발표 후 저작권과 관련한 시비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학교급별 입상에 해당되는 작품이 없을 시에는 선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상 내 역

	시상인원	총 인원	시상내역	
대 상	· 중·고등학생 통합 1명	1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최우수	· 중학생 1명	2명	상장 및 장학금 30만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상
	· 고등학생 1명			
우 수	· 중학생 3명	6명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대한변협인권재단 이사장상
	· 고등학생 3명			
장 려	· 중학생 6명	12명	상장 및 장학금 5만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상
	· 고등학생 6명			

수상자발표 2012년 11월 26일(월)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시 상 식 2012년 12월 10일(월)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주 최 대한변협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변협인권재단

